

# 사회복지 주간 동향(23.10.4.~10.6.)

## 1. 중앙정부 정책 동향

### 1 중앙정부 복지현안

####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1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대상 신청 >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5일(수)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음
  -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
    - 이전의 대출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 \*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지원(1차: 2014.05.14.~2015.05.13., 2차: 2020.3.24.~2021.3.23.)
  -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 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목)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신청이 가능
    -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지속되는 금리 상승기에 학자금 대출이 2.9% 고정금리로 상환부담이 낮아져 전환대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라고 밝힘
- \*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출처:교육부) 참조

## 2 중앙정부 복지현안

###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 자살 사망자 수는 12,906명으로 전년 대비 446명(3.3%) 감소 >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사회적 고립 완화 등이 긍정적 영향 추정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통계청이 발표('23.9.21.)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자살사망자는 12,906명으로, 2021년보다 446명 감소(3.3%)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이하 자살률)은 25.2명으로 지난해 대비 3.2% 감소('21년 26.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자살사망자 12,906명, 자살률 25.2명은 2018년 이후 제일 낮은 수치
  - 자살률: ('18) 26.6명, ('19) 26.9명, ('20) 25.7명, ('21) 26.0명, ('22) 25.2명
-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남성과 여성 자살률 모두 감소
  - (남성) ('21년) 자살사망자 9,193명, 자살률 35.9명 → ('22년) 자살사망자 9,019명, 자살률 35.3명
  - (여성) ('21년) 자살사망자 4,159명, 자살률 16.2명 → ('22년) 자살사망자 3,887명, 자살률 15.1명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살률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70대(-9.6%), 20대(-9.2%), 30대(-7.2%) 순으로 감소 폭이 큼, 40대(2.5%), 10대(0.6%)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자살률은 80세 이상(60.6명)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37.8명), 50대(29.0명), 40대(28.9명), 60대(27.0명) 순으로 높음
  - (연령대별 자살률) 80대(60.6명) > 70대(37.8명) > 50대(29.0명) > 40대(28.9명) > 60대(27.0명) > 30대(25.3명) > 20대(21.4명) > 10대(7.2명)
-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자살률 증감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증가 등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2022년에는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치료지원을 확대한 바 있음
  - 자살시도자·유족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22.8~), 자살 유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22.6~, 3개 시도 → 9개 시도) 등

- 지난해 자살률 감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등교, 출근, 영업시간 정상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전문가들은 20대 자살률 감소(-9.2%)는 사회적 고립감 완화, 30대 여성 감소(-19.6%)는 부양부담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정부는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음,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예방부터 자살고위험군 선제적 발굴·지원,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살시도자, 유족 등의 신체 손상치료비, 심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시작함
  - \*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여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자살 위험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함
    - 기본계획에는 정신건강검진 확대, 유해환경 개선,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정책부터 경제문제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자살예방을 위한 전 주기 정책이 담긴 청사진을 마련함
    - 또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 사업장 등에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공포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3 중앙정부 복지현안

####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 <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개정 적용 >
- < 인건비 지원 제외 규제 중단으로 취업제한 요인 해소 전망 >
-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보유기한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였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옴
- 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비교>

구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목적	▶ 아동학대 여부 조사·판단, 피해 아동·행위자 사례관리(상담·치료·교육 등) 등	▶ 아동학대 범죄사실 입증, 처벌 등
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보호·양육·교육하는 자 포함)에 의한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로서 형법상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피해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수행 주체	▶ 지자체(시군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 수사·사법기관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는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적 관점 적용, 「아동학대처벌법」은 형사법적 관점 적용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가 아동학대처벌법보다 포괄적으로 적용
-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되어 취업제한 요인이 해소될 전망,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

-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刑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시설 등)에 취업·노무제공 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이와 함께,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
-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개정도 추진
-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및 학대예방을 위해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함
- 또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을 추진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 2. 통계로 보는 복지

### 1 중앙 통계현안

####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